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71

발의연월일: 2021. 3. 24.

발 의 자:김경협·강민정·강선우

김병주 · 김승남 · 김승원

박성준 · 안규백 · 이상헌

이재정 · 홍성국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이에 대한 일몰이 도래될 예정임.

하지만 올해 3월부터 전국의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 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 우, 무상급식 재원을 충당하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국세를 납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 게 됨.

이에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20 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06조제1 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2호"를 "제2호가목 및 나목"으로, "적용하며,"를 "적용하며, 제2호다목 및 라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"로, "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"를 "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	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	
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	
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	
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	
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	
만 적용하고, <u>제2호</u> , 제3호, 제4	제2호가목 및 나목
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	
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<u>적용</u>	<u>적용</u>
<u>하며,</u>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	하며, 제2호다목 및 라목은 202
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	<u>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</u>
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	만 적용하고,
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	
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	<u>체결된 것에만 적용하</u>
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	<u>며</u>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